

제 정	2014.10.30.
개 정	2024.03.26.

보상위원회 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보상위원회 규정 [2024.03.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정관 제 32 조 제 1 항 제 4 호, 이사회규정 제 14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

제 2 조 【구성】

- 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 3 조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해임 및 충원】

-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한다.
- 이사회는 해임,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이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 종료시까지 결원된 위원을 충원한다. 다만, 신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제 5 조 【위원회】

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7 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권한 및 의무

제 9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위원장의 선임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10 조 【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의사록 작성의무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심의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1 조 【보고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간사】

1. 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2014.10.30.)

제 1 조 이 규정은 2014 년 10 월 30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2015.09.21.)

제 1 조 이 규정은 2015 년 09 월 2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8.11.29.)

제 1 조 이 규정은 2018 년 11 월 2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제 1 조 이 규정은 2019 년 03 월 2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3.09.26.)

제 1 조 이 규정은 2023 년 09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4.03.26.)

제 1 조 이 규정은 2024 년 0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